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
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총리 (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원료물질 등 취급시설 종사자의 건강진단 시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취급시설 종사자 건강진단 시기 합리화(시행령 제5조의2 개정)
 - 현행 법령에서는 취급시설 종사자의 종사 중 건강진단 시기를 직전 진단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로 규율 중임에 따라 사업자 관리 어려움 호소
 - 동 시행령 제10조의2에서 규율 중인 항공승무원 건강진단 시기와 유사하게 종사 후 매해로 규정하여 사업자 불편 해소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대통령령 제 호

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2제1항제2호 중 “날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각각 3개월 이내”를 “종사자는 매해(제1호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해는 제외한다)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의2(건강진단) ①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는 법 제14조제1 항제5호에 따라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·관리하는 종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시기에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.	제5조의2(건강진단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제1호에 따른 진단을 받은 날 <u>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을 기준</u> <u>으로 전후 각각 3개월 이내</u>	2. ----- <u>종</u> <u>사자는 매해(제1호에 따른 건</u> <u>강진단을 받은 해는 제외한</u> <u>다)</u>
3. (생 략)	3. (현행과 같음)
② · ③ (생 략)	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원자력안전위원회 생활방사선안전과	
연 락 처	(02) 397 - 7276